

공급망 상생결제 업무협약서(온라인마켓 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 (이하 “온라인마켓”이라 합니다)은(는) 상호 협력하여 온라인마켓을 통해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의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온라인마켓이 입점 Seller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의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입점 Seller와 협력기업의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 상생결제”라 함은 온라인마켓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 Seller(“입점 Seller”의 정의와 같습니다)와 입점 Seller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협력기업”의 정의와 같습니다)의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온라인마켓,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가 협력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전자방식의 공급망 금융을 말합니다.
- “온라인마켓”이라 함은 특정 공간(방송, 매체, 온라인 물, 백화점 등, 이하 “판매공간”이라 합니다)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입점 Seller 간의 물품 등의 거래를 중개(유사 형태를 포함합니다)하고 수취한 거래대금을 입점 Seller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 채무의 채무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업무협약(온라인마켓 용)’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입점 Seller”라 함은 온라인마켓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거래대금을 결제 받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입점 Seller용)’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협력기업”이라 함은 입점 Seller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그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협력기업 용)’을 체결한 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말합니다.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는 입점 Seller를 ‘상위 기업’이라 하고, 협력기업을 ‘하위 기업’이라 하며, 여러 협력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물품 등을 납품받는 협력기업을 ‘상위 기업’이라 하고, 그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하위 기업’이라 합니다. 복수의 협력기업은 상위 기업에서 하위 기업의 순서로 N차 협력기업, N+1차 협력기업이라 합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재단”은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 기업”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공급망 상생결제”에 따라 확정된 “입점 Seller”의 “외상매출채권” 대금 또는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온라인마켓”으로부터 변제 받아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며, “재단”은 “재단”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온라인마켓” 앞 구상권이 협약에 따라 재단에 부여되는 약정상 권리로서, 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적 의미의 ‘구상권’을 의미하지 아니함; 이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구상권’ 또는 ‘구상채무’의 의미에 관하여 동일)을 가집니다.
- “에스크로계좌”라 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설한 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로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해 온라인마켓이 결제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 및 지연배상금, 선지급(아래에서 정의됨)에 사용될 금원을 예치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 “MP(Market Place)”라 함은 「상생결제 운영요령」에서 정한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로서,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용기업 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은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및 발행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선지급 신청, 조회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마켓은 MP사이트에서 입점 Seller 앞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발행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조회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인 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온라인마켓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에서 입점 Seller가 온라인마켓의 이용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한 거래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온라인마켓이 입점 Seller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에 따른 채권을 말합니다.
- “전자적인 방식의 상생매출채권(이하 “상생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온라인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을 입점 Seller에게 납품하는



협력기업에게 납품거래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을 수취인으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당해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에 따른 채권을 말합니다.

10. “선지급 신청”이라 함은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선지급”이라 함은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에 의해 재단이 재단 명의의 에스스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약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의 체결,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의 발행 및 채권 발행의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업무의 방법)

- ① 이 협약에 의한 거래는 온라인마켓을 통한 물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입점 Seller가 온라인마켓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하위 기업이 상위 기업에 대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재단은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 기업이 부담하는 거래대금 지급채무를 아래와 같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은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한 때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과 상생매출채권 발행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입점 Seller가 채권 대금을 선지급 신청하여, 재단이 재단 명의의 에스스로 계좌에서 지급하여 채권 대금을 선지급하는 때에, 입점 Seller가 선지급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온라인마켓이 입점 Seller에게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입점 Seller가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또는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또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상위 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재단은 온라인마켓의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동시에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채무인수하여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에게 선지급한 선지급 대금에 대하여 온라인마켓 앞 구상권을 가지며, 온라인마켓은 재단이 선지급한 선지급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마켓이 변제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지연배상금의 지연배상금률은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입점 Seller는 온라인마켓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을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 대행을 통하여 채권 대금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⑤ 하위 기업은 상위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을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 대행을 통하여 채권 대금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 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선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채권 대금에 대하여는 재단 명의의 에스스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제4조 (이용한도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

- ① 온라인마켓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입점 Seller에게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온라인마켓이 발행하여 아직 결제하지 않은 채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와 지연배상금의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 | | |
|-------------------------------|--|---|
| 입점 Seller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발행 한도 | 금 | 원 |
| 지연배상금 변제방법 | 제3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재단 명의의 에스스로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기로 합니다. | |

- ② 온라인마켓은 재단 명의의 에스스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에게 선지급한 채권 대금 상당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재단 앞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③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선지급금 상당의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 기일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로 정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당일 중 상환되지 않은 선지급금과 당해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단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재단이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에게 선지급한 이후에는, 온라인마켓은 입점 Seller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가)압류 통지를 받거나, 입점 Seller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재단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5조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외상매출채권 및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 1. 온라인마켓은 **허위 매출 및 현금용통성 거래가 아닌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 용도**로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며,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의 가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합니다.
- 2. 상위 기업은 **허위 매출 및 현금용통성 거래가 아닌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 용도**로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며,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가장 만기일은 상생매출채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합니다.
- 3. 채권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채권의 만기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 5. 온라인마켓은 MP사이트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6. 상위 기업은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7.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온라인마켓 및 동 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기업을 하위 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매출채권의 소멸)

입점 Seller가 온라인마켓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또는 하위 기업이 상위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일에 재단이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계좌에 선지급하는 때**에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2.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가. 입점 Seller가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때**에, 입점 Seller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 나. 하위 기업이 입점 Seller로부터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혹은 하위 기업이 상위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게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때**에, 하위 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채권의 취소)

- ① 온라인마켓은 입점 Seller가 판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 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 영업일까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MP에게 외상매출채권 발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입점 Seller가 일부라도 선지급 받거나**,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온라인마켓은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제8조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③ **허위 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과 무관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취소 신청은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은행과 약정한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 ① 온라인마켓이 이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온라인마켓과 입점Seller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온라인마켓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② 온라인마켓은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결제 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
| | | | 본지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함 |

- ③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선지급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입점 Seller에게 지급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처리 중 결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전 항에서 정한 결제 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 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⑤ 입점 Seller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3조 제6항에 따라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 **온라인마켓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 채권 대금의 선지급 및 만기 결제)

- ①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을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은행의 지급 대행을 통하여 채권 대금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 받지 않은 채권 대금의 만기결제는 **온라인마켓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② 선지급 신청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선지급 신청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선지급 신청 시,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약정계좌로 대금 입금하므로, 선지급은 에스크로계좌의 선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⑤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이 선지급 신청한 일자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이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제10조 (업무의 제한)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1. 허위 매출, 현금용통서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제11조 (지급보류 등록)

이 협약과 관련하여 입점 Seller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압류 등”이라고 합니다)이 온라인마켓에게 송달되는 경우, **온라인마켓의 신청 등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입점 Seller가 외상매출채권 금액 전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받거나 협력기업 앞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입점 Seller의 매출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 등 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입점 Seller가 외상매출채권 금액의 일부라도 선지급을 받지도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하고 온라인마켓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3. 외상매출채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받거나 또는 하위 기업 앞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온라인마켓의 신청 등에 의해 외상매출채권의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4. 지급보류 등록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도래 시 온라인마켓의 결제 대금은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5. 온라인마켓에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 통지가 송달된 경우 온라인마켓은 지체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정보제공의 동의)

온라인마켓은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MP에게는 온라인마켓에 관한 사업자정보, 채권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2.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에게는 온라인마켓에 관한 사업자정보, 채권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13조 (협약서의 효력)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온라인마켓이 이 협약에 의해 이미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협약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순서로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상생결제 운영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⑤ 은행과 온라인마켓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인)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온라인마켓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주)하나은행 (인)

주 소: _____

온라인마켓 : (인)

주 소: _____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